



2006. 11.3.

대만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 대만의 식료품 수입관리제도

- 대만 정부는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품목별로 다양한 수입규제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만 정부는 식료품의 수입에서 다양한 품목별로 다양한 수입규제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 라면, 김치, 인스턴트커피, 인스턴트 면류 등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F01, B01, MW0, 451, 465등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수입규제 및 관세율은 대만 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검색하여 볼 수 있음 (<http://web.customs.gov.tw>)
 - 관세율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개 0~3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에 한해서는 화물 세를 별도로 부과시키고 있어 식품시장 진출에 있어 관세율 확인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지목되어, 관세율 역시 관세총국 홈 페이지에 검색하여 볼 수 있음
- 대만 식품검사제도는 식품위생관리법에 의거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 식품용 세척제, 식품업자 등에 대한 규제와 검사 관리되어 지고 있으며, 모든 식품은 식품표준에 의거 검사기준을 삼고 있음
- 식품의 범위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씹는 물품 및 그 원료로 정하고 있으며, 첨가물은 제조, 가공, 조미, 포장, 운송, 저장등에 사용되는 방부제, 착색제, 조미제, 표백제, 부화제등 17가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식품기구는 식품의 생산, 운송, 판매과정 중 직접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접촉이 되는 기계, 공구, 기구등을 의미함
- 수입식품 검사 신청
 - 검사 신청인은 수입식품 검사 신청서 및 수입식품 기본자료와 동 수입식품 관련 지정문서(허가 등)를 구비하여 표준검사국에 검사신청
 - 동일 포장 안에 두 종류 이상의 다른 제품이 있을 물품(사탕, 비스킷, 커피, 캔, 음료, 종합선물세트 등)은 세트 안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의 명칭 등 명세서 첨부
- 수입식품 검사 방식: 전수검사, 샘플검사, 서면검사
 - 전수검사 항목
 - >이전에 불합격 규정받았던 물품

- >육안검사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
- >전기 검사에 동일산지, 동일브랜드가 규정 부합되지 않은 물품
- >주관기관의 판단으로 위생안전에 재고가 필요한 물품
- 샘플검사 항목
 - >수입물품이 전수검사항목이 아닌 자로 5% 비율의 무작위 추출로 검사
 - >검사 불합격자는 차기 수입 검사 신청시 전수검사로 지정되며, 연속 5차례 전수검사에 합격이 되어야 샘플검사로 회복
- 서면검사 항목
 - >샘플검사에 합격된 물품의 나머지 부분과 상호 승인되는 외국기관의 시험보고서 혹은 검험증명된 물품은 서면검사로 통과되며, 단 위생안전이 고려되는 물품은 샘플검사 처리
- 수입식품 검사샘플 선정 방법
 - 수입식품이 고체의 것은 600g, 액체의 것은 1000ml을 취득하여 둘로 나누어 반은 검사용, 나머지 반은 재검사 혹은 샘플 용도로 보관
 - 고단가의 수입식품 검사샘플의 수량은 감량신청이 가능
 - 미생물검사가 필요한 식품은 최소단위의 완전한 포장단위로 취득
 - 냉동 냉장 운송식품은 컨테이너의 온도 및 포장상태 명시
 - 검사샘플 수량이 미달될 경우 검사완수 불가
- 검사작업
 -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행세칙, 건강식품관리법, 식품첨가물사용법위 및 용량표준, 식품위생표준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사작업이 되며, 행정원위생서에서 공고된 방법 혹은 국제기관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 등으로 검사 시행
 - 표준검사국 검사집행기관은 이전기록, 제품특성 및 국내외 정보를 참작하여 중점검사항목외 표시(라벨) 혹은 위생안전에 의심가는 물품은 상기범류를 근거로 관련항목별로 검사 실시
 - 검사내용은 수입식품검사기록표 내용검사란에 기록되며, 특수분석 및 미생물 불합격관련 별도의 분석표가 첨가됨
 - 검사결과 불합격자는 원포장상태의 샘플로 다시 별도의 조사팀이 검사를 대조
- 선통관 후처리 작업

- 샘플 검사기간이 5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각서를 받고 선통과 후검사의 형태로 검사 진행
- 물품의 종류가 많아 샘플 취득상 식품품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표준검사국 관할지부의 동의 및 수입상의 각서로 선통과 후검사 처리 가능
- 물품의 부피가 너무커서 샘플 취득이 어려울 경우(150kg이상, 예로 물통 같은 용기에 담긴 식품) 선통과 후검사 처리가 가능
- 선통과 후검사처리된 물품에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물품이 있는 현 위치에서 유동을 봉쇄